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5112300 판결 [구상금 및 지분환급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고순우

피 고 1. B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주

변론 종결 2019. 4. 19.

판결 선고 2019. 7. 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60,020,060원 및 그 중 607,402,082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6. 1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에 대하여 : 주문과 같다

피고 C, D에 대하여 : 피고 C, D은 공동하여 33,587,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5. E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7657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5. 22. 위 법원으로부터 "E,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9,836,258원과 그 중 871,122,560원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2008. 3.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6. 18.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의 청구원인은, E가 산림내채석허가를 위하여 담양군수에게 산림훼손적지복구비에치금보증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고와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체결시 E가 약정(지급)을 불이행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E는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 등이 위 보험계약에 대하여 E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바, E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나머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이었다.

다. 위 판결 확정 후 E가 2013. 6. 18.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 자녀 F, G,

H이 있었는데, 피고 B은 광주가정법원 2013노단1680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고, 자녀 F, G, H은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2018. 4. 17. 현재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전체 구상금채무는 아래와 같이

1,960,020,060원이고,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2%다.

(단위 : 원)

기준일자	잔여원금	미변제 연체이자	합계
2018. 4. 17.	607,402,082	1,352,617,978	1,960,020,060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의제자백,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확정 판결에 의하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므로 위 구상금채무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구상금채무의 시효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960,020,060원 및 그 중 원금인 607,402,082원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6. 11.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 제3조 제1항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관한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래 E의 부 1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3. 5. 23. 접수 제6859호 또는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3. 5. 23. 접수 제5261호로 2002. 1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E, C, D 명의의 합유 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E가 2013. 6. 18.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인 피고 C, D의 합유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9026호 또는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5. 6. 18. 접수 제6030호로 피고 C, D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E가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인 피고 B이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이 E의 단독재산상속인인바, E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 목적 조합에서 탈퇴되었고 그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나 피고 B은 E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조합재산의 지분환급을 피고 C, D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중 1/3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C, D은 피고 B을 대위하여 위 지분환급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적어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위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B이 E의 단독재산 상속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 중 1인이 사망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나머지 합유등기인 명의로 변경등기 되며, 다만 그 상속인과 나머지 합유등기명의인 사이에 청산절차가 남는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E의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종 소유로 피고 B의 지분환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법인 사단인 K 종회에 총유적으로 귀속된 재산인데 다만 그 등기명의만을 E, 피고 C,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위 수탁인들의 상속인들에게는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I 이 종종 소유로 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I의 사망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I 의 아들들인E, 피고 C, D 명의의 합유 등기가 각 마쳐졌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C, D 및 E의 조부모, 부모, E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유 등기를 마친 것은 종종 의 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I 의 자손들은 E가 2013. 6. 18. 사망한 뒤 2013년 정기총회에서 K 총회 규약을 명문화하였는바, 위 규약 제5조는 "본 총회의 종원은 K의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2013년 정기총회에서 피고 D을 회장으로, J, 피고 C을 이사로, L을 총무로, M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⑤ 2014년부터는 위 총회의 총무인 L이 종원들로부터 금원을 걷어 담양에 거주하는 N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위 묘소의 벌초 등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위 지분환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